|  |  |  |
| --- | --- | --- |
| **식품약품행정처벌절차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3호  　　<식품약품행정처벌절차규정>이 2014년3월 14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바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됨을 공포한다.  국　장　장용  　　　2014년 4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업무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해정처벌법>(이하 ‘해정처벌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이하 ‘행정강제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건강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과 명백한 사실, 확실한 증거, 합법적인 절차, 법률⬝법규⬝규장 적용의 정확성과 적정성, 법 집행문서 사용의 규범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부터 받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진술하고 해명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상급 식품약품관리부서는 하급 식품약품관리부서에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6조** 행정처벌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관할한다.  **제7조** 현(구)급,시(지역,주)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식품약품 해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약품 행정처벌 하건을 관할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직권 범위내에서 그가 행정처벌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건과 전국 범위내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약품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률, 법규, 규장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관할권을 배분할 수 있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이 정한 직권 범위내에서 행정처벌법 제19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직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조직은 위탁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위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구체적인 행정처벌 행위를 실시한다. 행정처벌을 위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위탁을 받은 조직이 실시하는 행정처벌 행위 및 기타 관련 행정집법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진다.  **제9조**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향(鄕)과 읍(鎭) 및 구역에 설치한 식품약품감독관리 파출기구는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10조** 동일 당사자의 동일 위법행위가 두개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관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먼저 입건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행정처벌 사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되 협상 미결인 경우 그 공동의 직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11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필요 시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그가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특수 사유로 인해 그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권 분쟁 사건 또는 관할 지정 신청 접수 후 10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정 결정을 내리고 하급 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할권이 있는 기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관련 행정관리부서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이송 받은 식품약품관리부서는 적시에 사건 조사처리 결과를 사건을 이송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사건 이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의 직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되 사건을 타부서로 재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범죄용의가 발견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집법기관 범죄용의 사건 이송 규정>의 규정에 따라 즉시 동급 공안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영 한다.  공안기관에 이송된 사건이 형사입건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형사입건통보서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건과 관계된 물품, 자료를 공안기관에 인도하고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압류 물품을 공안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압류물품 인도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조사, 증거 수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력조사요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력조사를 요청받은 부서는 협력수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협력업무를 완성하여야 하며 협력업무 완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협력조사를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에 따라 식품약품행정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비준증명문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비준을 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불법사건 조사처리 결과 법에 따라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문건 철회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 직권 범위내의 해정처벌을 실시하는 동시에 사건의 증거와 관련자료를 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비준을 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이관하여 허가증 발급기관 또는 비준기관이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문건 철회 처벌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비준증명문건 철회권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과 비준기관은 허가증 취소 또는 비준증명문건 철회의 행정처벌을 결정하는데 있어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장　입 건**  **제1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1. 감독검사와 추출검사에서 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신고, 제보가 들어온 경우; 3. 상급기관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경우; 4. 타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았거나 기타 방식, 통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입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은 7 근무일 이내에 입건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입건한다.   1. 확실한 법 위반 용의자가 있다; 2. 법 위반 사실이 있다; 3. 식품약품감독관리 행정처벌 대상범위에 속한다; 4.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입건 승인을 받고 2명 이상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제19조** 사건처리 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사건과 직적접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사건 당사자와의 기타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의 직무수행 배제 여부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자의 직무수행 배제 여부는 기타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직무수행 배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사건조사를 무단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조사와 증거 수집**  **제2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사건 조사는 2명 이상의 집법인원이 수행하여야 하고 집법인원은 조사업무 수행 시 관련 집법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최초 증거 조사 수행 시 사건조사 담당자 기피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기타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어음, 증빙, 기록 등 법정 보관의무가 있는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한다. 또한 사건조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법인원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접한 경우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 집법인원은 현장조사 수행 시 서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 서면기록에는 집법인원의 신분, 증명서 명칭, 증명서 번호 및 조사목적을 기재하고 집법인원이 서명한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조사 서면기록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면기록 각 폐이지에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고 서면기록에 그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한다. 서면기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내용 위에 조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을 남겨야 한다.  **제22조** 사건처리 담당인원는 법에 따라 사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녹음녹화자료, 증언, 당사자 진술, 검사보고, 감정의견, 조사기록, 전자데이터, 현장검사기록 등이 포함된다.  입건 전 조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23조** 증거는 원본과 원물로 수집되어야 한다. 원본과 원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 증거를 제공한 업체 또는 개인이 복제물 위에 서명 및 날인하고 ‘이 복제물은 ×××이 제공하였는바, 복제본과 원본(원물)이 일치함을 확인한다.’라는 문자설명을 남겨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증거는 그 출처를 설명하고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절차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국 주재 영사관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증거 소재국이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증명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 증거에 포함된 언어, 문자는 번역자격을 구비한 번역기구에 위탁하여 번역하거나 기타 정확하게 번역된 중문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서 형성된 증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증거가 소멸되거나 미래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경우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등기보관 물품 통지서를 발급한다. 당사자 및 관계자는 사전 등기보관 중에 있는 증거를 훼손, 소각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7일 이내에 사전 등기보관 증거에 대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보전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기록, 복제, 촬영, 녹화 등 보전조치를 취한 후 반납한다. 2. 검사, 검측, 검역, 감정이 필요한 증거는 검사, 검측, 검역, 감정에 교부한다. 3. 압수 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해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위법 물품을 압수한다. 4. 압류조치가 필요한 증거는 법에 따라 압류조치를 취한다. 5.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만 법 규정상 압류, 압수조치가 불가능한 증거는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처리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 등기보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법에 따라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집법인원은 당사자에게 압류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다.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 집법인원은 압류조치를 취한 24시간 이내에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 책임자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겨우 즉시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증거에 대한 사전 등기보관 조치 또는 압류 조치를 취할 시 당사자에게 현장 출두를 통보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서면기록에 조치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압류 대상 장소, 시설 및 재물은 본 부서 공인이 날인된 봉인지로 현장 봉인 또는 격지 봉인하고 당사자는 봉인을 무단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전 등기보관 물품과 압류 물품은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법인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9조** 압류 대상 장소, 시설과 재물은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무단 사용, 훼손, 이동 및 처분을 금지한다.  법률⬝법규의 규정 상 선행 처리가 가능한 쉽게 부식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은 당사자의 동의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선행 처리한다.  **제30조** 압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압류기간 연장이 결정된 후 적시에 압류기간 연장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품에 대한 검사, 검측, 검역 또는 감정 수행 시 검사(검측, 검역, 감정)고지서를 작성하여 한다. 검사, 검측, 검역, 감정 기간은 압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강제법 제28조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압류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집법인원이 당사자에게 서면기록 또는 기타 자료위에 서명, 날인 또는 기타 방식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당사자가 현장 출두, 서명, 날인 또는 기타 방식의 확인을 거절하였거나 당사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2명 이상의 집법인원이 서면기록 또는 기타 자료위에 그 사유를 기록한 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하거나 녹음,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32조** 위법 사실 조사 과정에서 샘플추출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구는 규정된 기한내에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33조** 간이절차를 제외하고 사건 담당자는 사건 조사 종결 후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사건 개요, 법 위반 사실 과 증거, 조사경과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할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처벌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여 위법 행위를 즉시 또는 기한부 시정토록 한다.  **제5장　처벌결정**  **제1절 일반절차**  **제35조** 사건 담당자가 사건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3명 이상의 관계인원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경과, 사회위해성, 사건처리절차, 처벌의견 등에 대하여 합의(合議)한다.  합의부는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증거 보충, 재조사, 사건 취하 또는 기타 처리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법사실, 처벌의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정 진술권과 해명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처벌을 가중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영업⬝생산 정지, 허가증 취소, 비준증명문건 철회,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비교적 높은 현금가치의 재물 압수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기준은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정부규장 등 관련 규범성문건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는 상황별로 다음 각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위법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해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 규정상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4.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9조** 사건 경과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책임자 전체토론을 통하여 결정한다. 책임자 전체토론 과정은 서면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판정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4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법률, 법규 또는 규장 위반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 유형과 근거; 4. 행정처벌 이행방식과 이행기한; 5. 행정처벌 불복 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명칭과 결정 일자.   식품, 약품 및 기타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압수물품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재물은 법 규정상 소각처리 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주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처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하는 물품은 그 내용과 수량을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간이절차**  **제42조** 법위반 사실이 확실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건 현장에서 바로 개인 50위안 이하, 법인과 기타 조직 1,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집법인원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집법증명서를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공인이 날인된 통일 양식의 현장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행정처벌결정서는 현장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당사자가 접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44조** 집법인원은 7 근무일 이내에 현장 행정처벌 결정을 소속부서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송 달**  **제45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 후 선고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선고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에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는 사건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접수 서명을 받는다. 송달 대상자가 개인이고 거주지에 부재 시 동거중인 성인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하도록 한다. 송달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송달 대상자가 기타 조직인 경우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송달 대상자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인은 수령증에 수령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수령인이 수령장에 서명 및 날인한 일자를 행정처벌결정서 송달일로 간주한다.  **제46조** 송달 대상자 또는 그와 동거중인 성인가족이 행정처벌결정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해당 기층조직 또는 소속업체의 관계자를 송달장소에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수령장에 수령 거절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 송달인, 현장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처벌결정서를 송달 대상자의 거주지에 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직접송달이 어려운 경우 근방에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대리송달 하거나 우편송달 할 수 있다. 우편송달의 경우 수령장에 명기된 수령일자를 송달일로 간주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내린 식품약품비준증명문건 철회의 행정처벌은 당사자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대신 송달한다.  **제48조** 송달 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본 장에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다. 공시일 부터 만 60일이 되는 날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 원 거주지에 공시문을 부착하거나 신문지 게재, TV 방송 등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공시송달의 경우 사건기록에 공시송달 이유와 경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장　집행과 사건종결**  **제49조** 행정처벌결정서가 송달된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서에 명기된 기한내에 처벌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기한 연장 또는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담당자가 심사 후 이행기간 연장 또는 벌급 분할납부기한과 금액을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50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벌의 집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중단이 결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벌금 부과 및 불법소득 압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벌금을 수취하는 기구는 상호간 독립된 관계여야 한다. 규정상 현장에서 벌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법인원이 직접 벌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본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이 내려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취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 현장에서 수취하지 않으면 미래에 집행이 어려울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제53조** 편벽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집법인원이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수취 할 수 있다.  **제54조** 식품약품가독관리부서와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수취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에서 제정 및 배포한 양식의 벌금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수취한 벌금은 수취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로 상납해야 하며, 식품약품감독부서는 2일 이내에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처리 해야 한다.  **제55조** 당사자가 법정 기한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도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당사자에게 서면 행정처벌결정 이행최고장을 발송하여 처벌결정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의무 이행기간, 이행방식, 법정 진술권과 해명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벌금 처벌의 경우 명확한 금액과 납부방식을 고지하여야 한다.  벌금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가중된 금액이 기존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를 기록하고 재검토해야 하며 진술⬝해명 서면기록과 진술⬝해명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행정처별결정 이행최고장 송달일로부터 10 근무일 경과 후 당사자의 처벌결정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청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 행정처벌결정이 이행 또는 집행된 후 사건담당자는 행정처벌사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자료를 정리⬝제본하여 보관한다.  **제8장　부　칙**  **제57조** 본 규정에서 시간, 일로 규정된 기간 계산시 개시 시간과 개시일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본 규정에서 ‘이상’, ‘이하’, ‘이내’라 함은 그 숫자를 포함한다.  **제5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의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에 기초하여 본 행정구역의 행정처벌문서 표준양식을 제정 및 인쇄할 수 있다.  **제61조** 본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로 시행하며, 2003년 4월 28일 공표된 <약품감독행정처벌절차규정>(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  | **食品药品行政处罚程序规定**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令第3号  　　《食品药品行政处罚程序规定》已于2014年3月14日经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6月1日起施行。  　局　长　张勇  　　　2014年4月28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行使行政处罚权，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以下简称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以下简称行政强制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等有关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违反食品、保健食品、药品、化妆品、医疗器械管理法律、法规、规章的单位或者个人实施行政处罚，应当遵照本规定。  **第三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行政处罚，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做到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法律法规规章适用准确适当、执法文书使用规范。  **第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给予的行政处罚，享有陈述、申辩权；对行政处罚不服的，有权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五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行政处罚监督制度。  　 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的行政处罚进行监督。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作出的违法或者不适当的行政处罚决定，责令其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依法予以变更或者撤销。  **第二章　管　辖**  **第六条**　行政处罚由违法行为发生地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管辖。  **第七条**　县（区）、市（地、州）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职权管辖本行政区域内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  　 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依职权管辖本行政区域内重大、复杂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依职权管辖应当由自己实施行政处罚的案件及全国范围内发生的重大、复杂的食品药品行政处罚案件。  　 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依据法律法规和规章，结合本地区实际，规定本行政区域内级别管辖的具体分工。  **第八条**　县级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在法定权限内委托符合行政处罚法第十九条规定条件的组织实施行政处罚。  　 受委托的组织应当在委托范围内，以委托部门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委托部门应当对受委托组织的行政处罚行为及其相关的行政执法行为进行指导和监督，并对该行为的后果承担法律责任。  **第九条**　县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乡镇或者区域设置的食品药品监督管理派出机构，依照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行使行政处罚权。  **第十条**　对当事人的同一违法行为，两个以上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均有管辖权的，由先行立案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管辖。对管辖权有争议的，应当协商解决；协商不成的，报请共同的上一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指定管辖。  **第十一条**　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认为必要时可以直接查处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管辖的案件，也可以将自己管辖的案件移交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查处。  下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本部门管辖的案件由于特殊原因不能行使管辖权的，可以报请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管辖或者指定管辖。  **第十二条**　上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接到管辖争议或者报请指定管辖请示后，应当在10个工作日内作出指定管辖的决定，并书面通知下级部门。  **第十三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案件不属于本部门管辖的，应当及时移送有管辖权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或者相关行政管理部门处理。  　 受移送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将案件查处结果及时函告移送案件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认为移送不当的，应当报请共同的上一级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指定管辖，不得再次移送。  **第十四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查处案件时，发现违法行为涉嫌犯罪的，应当按照《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的要求，及时移送同级公安机关。  　 公安机关决定立案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接到公安机关立案通知书之日起3日内将涉案物品以及与案件有关的其他材料移交公安机关，并办结交接手续；对涉案的查封扣押物品，还应当填写查封扣押物品移交通知书，并书面告知当事人。  **第十五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办理行政处罚案件需要其他地区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协助调查、取证的，应当出具协助调查函。协助部门一般应当在接到协助调查函之日起15个工作日内完成相关工作；需要延期完成的，应当及时告知提出协查请求的部门。  **第十六条**　依法应当吊销食品药品行政许可证或者撤销批准证明文件的，由原发证或者批准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决定。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查处违法案件，对依法应当吊销许可证或者撤销批准证明文件的，在其权限内依法实施行政处罚的同时，应当将取得的证据及相关材料报送原发证、批准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由原发证、批准的部门依法作出是否吊销许可证或者撤销批准证明文件的行政处罚决定。需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撤销批准证明文件的，由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报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决定。  　 原发证、批准的部门依法作出吊销许可证和撤销批准证明文件的行政处罚决定，依照本规定进行。    **第三章　立　案**  **第十七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下列事项及时调查处理：  　 （一）在监督检查及抽验中发现案件线索的；  　 （二）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投诉、举报的；  　 （三）上级机关交办或者下级机关报请查处的；  　 （四）有关部门移送或者经由其他方式、途径披露的。  　 符合立案条件的，应当在7个工作日内立案。  **第十八条**　立案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有明确的违法嫌疑人；  　 （二）有违法事实；  　 （三）属于食品药品监督管理行政处罚的范围；  　 （四）属于本部门管辖。  　 符合立案条件的，应当报分管负责人批准立案，并确定2名以上执法人员为案件承办人。  **第十九条**　办案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避；当事人也有权申请其回避：  　 （一）是本案的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  　 （二）与本案有直接利害关系；  　 （三）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案件公正处理的。  　 办案人员的回避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分管负责人决定，负责人的回避由部门其他负责人集体研究决定。  　 回避决定作出前，被申请回避人员不得擅自停止对案件的调查处理。  **第四章　调查取证**  **第二十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进行案件调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  　 首次向案件当事人收集、调取证据的，应当告知其有申请办案人员回避的权利。  　 被调查人或者有关人员应当如实回答询问并协助、配合调查，及时提供依法应当保存的票据、凭证、记录等相关材料，不得阻挠、干扰案件的调查。  　 办案过程中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执法人员应当保守秘密。  **第二十一条**　执法人员进行现场调查时，应当制作笔录。笔录应当注明执法人员身份、证件名称、证件编号及调查目的。执法人员应当在笔录上签字。  　 笔录经核对无误后，被调查人应当在笔录上逐页签字或者按指纹，并在笔录上注明对笔录真实性的意见。笔录修改处，应当由被调查人签字或者按指纹。  **第二十二条**　办案人员应当依法收集与案件有关的证据。证据包括书证、物证、视听资料、证人证言、当事人陈述、检验报告、鉴定意见、调查笔录、电子数据、现场检查笔录等。  立案前调查或者检查过程中依法取得的证据，可以作为认定事实的依据。  **第二十三条**调取的证据应当是原件、原物。调取原件、原物确有困难的，可以由提交证据的单位或者个人在复制品上签字或者加盖公章，并注明“此件由×××提供，经核对与原件（物）相同”的字样或者文字说明。  **第二十四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的证据，应当说明来源，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证据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  　 境外证据所包含的语言、文字应当提供经具有翻译资质的机构翻译的或者其他翻译准确的中文译文。  　 在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形成的证据，应当按照有关规定办理证明手续。  **第二十五条**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经分管负责人批准，可以先行登记保存，并向当事人出具先行登记保存物品通知书。先行登记保存期间，当事人或者有关人员不得损毁、销毁或者转移证据。  **第二十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先行登记保存的证据，应当在7日内作出以下处理决定：  　 （一）需要采取证据保全措施的，采取记录、复制、拍照、录像等证据保全措施后予以返还；  　 （二）需要检验、检测、检疫、鉴定的，送交检验、检测、检疫、鉴定；  　 （三）依法应当予以没收的，作出行政处罚决定，没收违法物品；  　 （四）需要查封、扣押的，依法采取查封、扣押措施；  　　（五）违法事实不成立，或者违法事实成立但依法不应当予以查封、扣押或者没收的，解除先行登记保存措施。  　 逾期未作出处理决定的，应当解除先行登记保存。  **第二十七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案件调查时，经分管负责人批准可以依法采取查封、扣押等行政强制措施，执法人员应当向当事人出具查封、扣押决定书。  　 情况紧急，需要当场采取查封、扣押措施的，执法人员应当在查封扣押后24小时内向分管负责人报告，并补办批准手续。分管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行政强制措施的，应当立即解除。  **第二十八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实施先行登记保存或者查封、扣押时，应当通知当事人到场，并在现场检查笔录中对采取的相关措施情况予以记载。  　 对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应当使用盖有本部门公章的封条就地或者异地封存，当事人不得擅自启封。  　 对先行登记保存或者查封、扣押的物品应当开列物品清单，由执法人员、当事人或者有关人员签字或者加盖公章。  **第二十九条**　查封、扣押的场所、设施或者财物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损毁或者擅自转移、处置。  　 对容易腐烂、变质的物品，法律法规规定可以直接先行处理的，或者当事人同意先行处理的，经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分管负责人批准，在采取相关措施留存证据后可以先行处理。  **第三十条**　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30日；情况复杂的，经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分管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30日。  　 作出延长查封、扣押期限决定后应当及时填写查封扣押延期通知书，书面告知当事人，并说明理由。  　 对物品需要进行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的，应当填写检验（检测、检疫、鉴定）告知书。查封、扣押的期间不包括检验、检测、检疫或者鉴定的期间。  符合行政强制法第二十八条规定的，应当解除查封、扣押。  **第三十一条**　执法人员在调查取证过程中，要求当事人在笔录或者其他材料上签名、盖章或者以其他方式确认，当事人拒绝到场，拒绝签名、盖章或者以其他方式确认，或者无法找到当事人的，应当由两名执法人员在笔录或者其他材料上注明原因，并邀请有关人员作为见证人签字或者盖章，也可以采取录音、录像等方式记录。  **第三十二条**　执法人员调查违法事实，需要抽取样品检验的，应当按照有关规定抽取样品。检验机构应当在规定时限内及时进行检验。  **第三十三条**　案件调查终结后，案件承办人应当撰写调查终结报告，简易程序除外。调查终结报告内容包括：当事人基本情况、案由、违法事实及证据、调查经过等；拟给予行政处罚的，还应当包括所适用的依据及处罚建议。  **第三十四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进行案件调查时，对已有证据证明有违法行为的，应当出具责令改正通知书，责令当事人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  **第五章　处罚决定**  **第一节　一般程序**  **第三十五条**　承办人提交案件调查终结报告后，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3名以上有关人员对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社会危害程度、办案程序、处罚意见等进行合议。  　 合议应当根据认定的事实，提出予以处罚、补充证据、重新调查、撤销案件或者其他处理意见。  **第三十六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作出处罚决定前应当填写行政处罚事先告知书，告知当事人违法事实、处罚的理由和依据，以及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申辩权。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经复核成立的，应当采纳。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不得因当事人申辩而加重处罚。  **第三十七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在作出责令停产停业、吊销许可证、撤销批准证明文件、较大数额罚款、没收较大数额财物等行政处罚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按照法定程序组织听证。  　 较大数额罚款的标准，按照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等有关规范性文件的规定执行。  **第三十八条**　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应当报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审查。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根据不同情况，分别作出如下决定：  　 （一）确有应受行政处罚的违法行为的，根据情节轻重及具体情况，作出行政处罚决定；  　 （二）违法行为轻微，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不予行政处罚；  　 （三）违法事实不能成立的，不得给予行政处罚；  　 （四）违法行为已构成犯罪的，移送公安机关。  **第三十九条**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应当由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人集体讨论决定。集体讨论决定的过程应当有书面记录。  　 重大、复杂案件标准由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根据实际确定。  **第四十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制作行政处罚决定书。  行政处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违反法律、法规或者规章的事实和证据；  　 （三）行政处罚的种类和依据；  　 （四）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五）不服行政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六）作出行政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  　 行政处罚决定中涉及没收食品药品或者其他有关物品的，还应当附没收物品凭证。  　 行政处罚决定书应当盖有作出行政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的公章。  **第四十一条**　除依法应当予以销毁的物品外，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对依法没收的非法财物，经分管负责人批准，依照行政处罚法第五十三条规定予以处理。处理的物品应当核实品种、数量，并填写清单。  **第二节　简易程序**  **第四十二条**　违法事实确凿并有法定依据，对公民处以50元以下、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以1000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行政处罚的，可以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第四十三条**　执法人员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的，应当向当事人出示执法证件，填写预定格式、编有号码并加盖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公章的当场行政处罚决定书。  　 当场行政处罚决定书应当当场交付当事人，当事人签字或者盖章签收。  **第四十四条**　执法人员当场作出的行政处罚决定，应当在7个工作日以内报所属部门备案。  **第六章　送　达**  **第四十五条**　行政处罚决定书应当在宣告后当场交付当事人；当事人不在场的，应当在7日内依照本章规定，将行政处罚决定书送达当事人。  　 行政处罚决定书由承办人直接送交当事人签收。受送达人是公民的，本人不在时，交其同住成年家属签收；受送达人是法人的，应当由其法定代表人签收；受送达人是其他组织的，由其主要负责人签收。受送达人有代理人的，可以送交其代理人签收。  　 受送达人应当在送达回执上注明收到日期并签字或者盖章。签收日期即为送达日期。  **第四十六条**　受送达人或者其同住成年家属拒收行政处罚决定书的，送达人可以邀请有关基层组织或者所在单位人员到场并说明情况，在送达回执上注明拒收事由和日期，由送达人、见证人签字或者盖章，将行政处罚决定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即视为送达。  **第四十七条**　直接送达有困难的，可以委托就近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代为送达或者邮寄送达。邮寄送达的，回执注明的收件日期即为送达日期。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作出的撤销食品药品批准证明文件的行政处罚，交由当事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送达。  **第四十八条**　受送达人下落不明，或者依据本章规定的其他方式无法送达的，公告送达。自发出公告之日起60日即视为送达。  　 公告送达，可以在受送达人原住所地张贴公告，也可以在报纸、电视等刊登公告。  　 公告送达，应当在案卷中载明公告送达的原因和经过。  **第七章　执行与结案**  **第四十九条**　行政处罚决定书送达后，当事人应当在处罚决定的期限内予以履行。  　 当事人确有经济困难，可以提出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申请，并提交书面材料。经案件承办人员审核，确定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期限和金额，报分管负责人批准后执行。  **第五十条**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行政处罚不停止执行，但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期间决定或者裁定停止执行的除外。  **第五十一条**　作出罚款和没收违法所得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与收缴罚没款的机构分离。除按规定当场收缴的罚款外，执法人员不得自行收缴罚没款。  **第五十二条**　依据本规定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有下列情形之一的，执法人员可以当场收缴罚款：  　 （一）依法给予20元以下罚款的；  　 （二）不当场收缴事后难以执行的。  **第五十三条**　在边远、水上、交通不便地区，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及其执法人员依照本规定作出处罚决定后，当事人向指定的银行缴纳罚款确有困难的，经当事人提出，执法人员可以当场收缴罚款。  **第五十四条**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及其执法人员当场收缴罚款的，应当向当事人出具省、自治区、直辖市财政部门统一制发的罚款收据。  　 执法人员当场收缴的罚款，应当自收缴罚款之日起2日内交至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2日内将罚款缴付指定的银行。  **第五十五条**　当事人在法定期限内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前应当填写履行行政处罚决定催告书，书面催告当事人履行义务，并告知履行义务的期限和方式、依法享有的陈述和申辩权，涉及加处罚款的，应当有明确的金额和给付方式。  　 加处罚款的总数额不得超过原罚款数额。  　 当事人进行陈述、申辩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记录、复核，并制作陈述申辩笔录、陈述申辩复核意见书。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采纳。  　 履行行政处罚决定催告书送达10个工作日后，当事人仍未履行处罚决定的，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并填写行政处罚强制执行申请书。  **第五十六条**　行政处罚决定履行或者执行后，办案人应当填写行政处罚结案报告，将有关案件材料进行整理装订，归档保存。  **第八章　附　则**  **第五十七条**　本规定中的期限以时、日计算，开始的时和日不计算在内。期限届满的最后一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日为届满的日期。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五十八条**　本规定中的“以上”、“以下”、“以内”，均包括本数。  **第五十九条**　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实际制定本规定的实施细则。  **第六十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行政处罚所适用的文书格式范本。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参照文书格式范本，制定本行政区域行政处罚所适用的文书格式并自行印制。  **第六十一条**　本规定自2014年6月1日起施行。2003年4月28日公布的《药品监督行政处罚程序规定》（原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令第1号）同时废止。 |